


<h1>보도자료</h1> <p>2023. 9. 7.</p>		<h2>양형위원회</h2>
	<p>문의</p>	<p>운영지원단장 범선윤 (☎ 02-3480-1924)</p>

양형연구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9/7(목) 개최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공동으로 2023. 9. 7.(목) 14:00 『스토킹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행사 개요

 - 일시: 2023. 9. 7.(목) 14:00~17: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1: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2: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 <토론>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이상 가나다 순

■ 발표 및 토론 요지

1.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발표 요지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외국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갖는 특성을 살피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

○ 현행법은 위험한 스토킹을 통제하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개입 확대를 자제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친밀성의 맥락에서 많이 발생함

- 이와 같이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질과 친밀성이 고려되지 않은 스토킹의 법적 모델은 현실과 맞지 않아 법 제정 이후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모순과 허점을 남김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당사자들이 형성해온 관계 이력의 맥락에서 발생하여, 잠재적으로 더욱 위협적이고 재범률이 더 높음. 이는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통념과 상반됨

-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대체로 위험성이 더 높지만 스토킹의 전형과 동떨어져 있어 다른 관계에서의 스토킹보다 스토킹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고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높은 경향을 보임

○ 법·정책 개선 방안

- 스토킹 관련 각종 지침은 스토킹과 피해자의 관계성과 스토킹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 스토킹행위도 포섭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구성요건 추가 필요. 스토킹이 제3자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스토킹처벌법이 포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확대
-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별 사례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기관도 접근금지 외 스토킹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서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의 발표 요지

-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양형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영국의 양형 판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립방향을 제시
- 2023. 1. 2.부터 2023. 5. 31.까지 1심 또는 항소심이 선고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건 1,295건의 판결문 분석 결과

- ▲ 스토킹처벌법위반 단독범행은 563건(43.4%)이었고, 나머지 732건(56.5%)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 ▲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94건으로 전체 경합범죄 1,182건의 3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주거침입범죄가 214건으로 18.1%, 디지털성범죄가 137건으로 11.5%. 뒤이어 손괴범죄 127건(10.7%), 성범죄 55건(4.6%), 체포·감금범죄 49건(4.1%), 명예훼손범죄 38건(3.2%),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27건(2.2%), 업무방해범죄 26건(2.1%) 순
- ▲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관계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642건),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관계(106건)
- ▲ 스토킹범죄의 절반 이상(58%)이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교제 폭력, 가정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 다음으로는 이웃 간(7%)의 스토킹범죄임
- ▲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배우자 관계인 경우는 검토 대상 판결 중 58%인 반면, 살인범죄, 강간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79%에 해당하여,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스토킹범죄가 중대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스토킹범죄의 양형요소

- 스토킹범죄가 경합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고려되어 권고영역이 상향된 사례가 있었음
-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는 스토킹 기간, 재범위험성, 중대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피해 정도(범행 결과), 위법성 인식, 범행 수단(내용)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와의 경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범행 경위가 감경요소로 참작되었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이나 교제상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연락하는 것 등)

○ 영국 양형기준의 시사점

- 영국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요소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활방식을 상당히 변경시킨 경우'를 포함하고, 특별양형인자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범죄의 영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서 제외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

3. 토론 요지

① 김현아 변호사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의 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스토킹 유형이 제한되어 있음. 스토킹 행위에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두어야만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온라인상 스토킹의 포괄적 규정이 없다

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임

-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스토킹 기간, 피해자와 관련된 '제3자'의 피해,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접근한 방법 등을 가중요소로 설정할 수 있음
- 양형인자에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스토킹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개념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잠정조치 위반 등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

② 박천웅 교수의 토론 요지

- 모르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 그리고 그로 유발하는 불쾌감에 대해 2019년 한국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스토킹범죄자의 행위를 사이코패스나 심신미약 등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잠재한 권력관계와 친밀성을 감안하지 못함
- 거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관계에서 혹은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개입과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난점이 있음
-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 위계적 성격이 강하고 그에 반해 개인성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고 여겨지기에, 친밀성이나 권력관계에 의한 스토킹범죄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일 수 있는 여지가 큼

③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토론 요지

-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이라는 점, 스토킹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제3자가 이용되거나 스토킹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접근금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상황에 대한 착시만 줄 수 있다는 점, 피해자 의사 표시가 피해자의 위험성을 높이고 안전 확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중대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스토킹의 특성과 현장의 경험 등은 양형기준 마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양형요소로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 생활방식 변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차 피해 야기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은 스토킹의 특성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함
- 스토킹 관련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스토킹이 반영되어야 함

④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률로 독일의 폭력방지법 및 독일 형법 제238조를 소개함
- 독일 형법 제238조는 2017년 및 2021년 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생겼으며, 중범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조건부 친고죄 규정은 삭제됨
- 독일의 스토킹범죄 양형 통계 제시: 스토킹범죄 양형 강화 추세

⑤ 최한얼 검사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의 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포괄적 정의 규정을 도입할 경우 수사기관 및 법

관의 자의에 따라 소추 및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므로 도입 여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으로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범집행 배제를 확보할 수 있는 포괄적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있음. 법률 개정을 통해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실무상 가족보다도 더 자주 교류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동거인이나 가족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는 유형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면, 전화 진술, 비대면 화상 진술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견 개진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심문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용함이 상당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행동기를 감경 사유로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력을 약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범행동기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활방식을 상당히 변경시킨 경우',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범죄의 영향',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⑥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와 주로 경합되는 범죄마다 스토킹범죄 관련 유형이나 양형 인자를 추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저해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단일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실익이 큼
-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함

■ 향후 일정

- 심포지엄 결과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서 검토될 예정
- 다음 양형위원 전체회의(제127차 회의)
 - 일시: 2023. 9. 18. (월) 오후, 대법원 회의실
 - 안건: 마약범죄 및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